

(가칭)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2차공동회의 결과회의록

- 일시 : 08. 2. 13(수) 17:00~18:00
- 장소 :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6층 626호 회의실
- 참석 : 환경부 2인
국방부 1인
경기도 1인
강원도 2인
환경연합 1인
녹색연합 2인

○ 안건

- 1차 공동회의(08.1.24)에서 결정된 양해각서 체결 주체의 변경등 유관기관별 의견 수렴
- 향후 일정 협의

1. 양해각서 체결 주체의 변경 (국방부 제안)

- : 6개기관(환경부, 국방부, 경기도, 강원도, 환경운동연합, 녹색연합)에서 4개기관(환경부, 국방부, 경기도, 강원도)으로 변경

국방부 입장 : 시민단체와 MOU체결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은 환경부, 경기도, 강원도와 체결하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1차회의에서 결정된 운영안으로 진행하고자 함. 그러므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환경단체의 권한, 방식 등은 변경 없음.

결정사항 : 양해각서 체결 주체는 6개기관에서 4개기관으로 진행하고, 협의체 운영규정은 1차안으로 합의하며, 그에 따라 환경단체의 활동 권한등은 그대로 지속한다.

2. 양해각서 체결 주체의 변경에 따른 환경운동연합, 녹색연합의 참여 범위 및 방식

결정사항 : 운영규정의 변동이 없으므로 참여범위나 방식 등은 합의된 원안으로 진행한다.

3. 지역별 단위 협의체(국방부 구성)의 본 협의체 참여 범위 및 방식

국방부 입장 : 지역협의체의 필요성과 운영의 밑그림만 구두로 제시. 지역협의체에 지속적으로 국방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내 '국방시설본부'가 지역협의체에 참여함.

필요성 : 유관기관협의체와 지역간 상호 의사소통 채널의 필요성

해당 지역 정화사업 전반에 관하여 지역의견을 수렴, 조정

구 성 : 국방시설본부, 위수탁 전문기관, 해당 지자체, 시민단체, 주민

역 할 : 정화사업의 모니터링, 의견조정과 수렴

환경부 의견 : 지역협의체 참여하는 국방시설본부는 국방부의 권한을 대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국방부가 참석해야 한다.

결정사항 : 국방부가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.

4. 기타 안건 결정사항

-양해각서 체결 : 3월초로 진행하며 언론보도와 자료는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진행

-협의체 회의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: 해당 기관은 대리 참석과 위임이 가능

-국방부 제안인 지역별 단위 협의체의 내용은 구두로 보고되었으므로 문서화하여 2차 공동회의 결과회의록에 첨부